

---

# 2023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---

2023. 9.

**디 지 털 정 책 관**  
(정보공개담당관)

회의명	2023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
회의일시	2023. 9. 7.(목) 14시
회의장소	영상회의
심의위원회	제2정보공개심의회
회의 참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참석위원 이종수 위원, 이승민 위원, 원은자 위원, 권현정 위원</li> <li>○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(간사), 박성미 주무관(서기)</li> </ul>
안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3-64호 : 서울시 관리위탁시설(삼청각) 관련 자료</li> <li>○ 2023-65호 : 주거정비과-3354(2022.2.25.)의 불임문서</li> <li>○ 2023-66호 : 119신고내역 및 구급활동일지</li> </ul>
심의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3-64호 : 부분인용</li> <li>○ 2023-65호 : 부분인용</li> <li>○ 2023-66호 : 각하</li> </ul>

## 1. [의안번호 2023-64] : 서울시 관리위탁시설(삼청각) 관련 자료

### ○ 000 위원

이거 사망사고 유족이 청구한 것 같은데 이게 산재처리가 됐어요. 그런데 추가로 무슨 사망원인에 대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 유족이 추가로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, 원인이?

### ○ 000 주무관

저희도 이 문서 외에, 정보공개청구서라든가 이의신청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청구의 취지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.

### ○ 000 위원

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, 산재사고가 산재로 이미 처리가 된 거잖아요. 단지 이 문서만 청구를 한 거예요?

### ○ 000 주무관

그렇습니다.

### ○ 000 위원

그래서 지금 네 가지 문서를 주셨는데, 네 가지 문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거든요. 그런데 2022년 10월 19일 삼청각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관련 서울시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 일체 이 문서는 없는 거지요?

### ○ 000 주무관

그렇습니다. 그리고 삼청각은 서울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위탁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### ○ 000 위원

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. 파악은 했고요.

이 4번 이의신청서에서 청구한 이 4번 문서 이거는 없어서 각하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?

### ○ 000 주무관

그렇습니다.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이렇게 산재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라 이러한 어떤 법적근거 또는 지침 이런 것은 없습니다.

○ 000 위원

그냥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.

그리고 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계약서 이것도 비공개 의견을 주셨는데, 이게 삼청각 행정재산관리 및 위수탁협약서 이거랑 같이 사인을 하면서 이 대표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계약서 이것도 같이 사인을 한 문서지요?

○ 000 주무관

그렇습니다.

○ 000 위원

삼청각 행정재산관리 위수탁 이거는 경영상·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 보여요. 그래서 비공개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요.

이 근로자권리보호이행계약서 이 내용을 보면 경영상·영업상 비밀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보호나 고용안전, 노동환경 이런 거를 대표가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한 거라서 이게 경영상·영업상 어떤 비밀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거는 근로자가 충분히 알아야 될 사안 아닌가 싶은데요.

○ 000 주무관

그래서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현재 관리위탁회사는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. 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.

○ 000 위원

이거는 반대를요?

○ 000 주무관

네, 관리위탁회사에서.

○ 000 위원

어차피 산재처리도 됐고 근로자 질병사망인데 이거를 굳이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? 저

는 이거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권한이나 보호하겠다 이런 걸 써놓은 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.

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○ 000 주무관

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, 삼청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면을 담고 있지 않고 전반적인 어떤 포괄적인 업무를 담고 있어서 공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.

○ 000 위원

공개해도 된다는 거지요? 제가 볼 때는 이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.

○ 000 주무관

네.

○ 000 위원

그다음에 지도점검결과보고 그거는 부분공개 의견 주셨잖아요.

○ 000 주무관

그렇습니다.

○ 000 위원

형광펜 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, 마지막 이 붙임 이거는 다 공개인가요?

○ 000 주무관

비공개입니다.

○ 000 위원

이거는 점검내용하고 점검결과니까 이게 뭐 경영상 관리상태 이런 걸 체크하는 것이라서 저도 부분공개 의견에는 동의합니다.

○ 000 위원장

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
○ 000 위원

저는 따로 없습니다.

○ 000 위원

저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.

지금 여기 지도점검결과보고에 형광펜으로 비공개된 부분도 전부 다 영업상 비밀 때문에 비공개한다는, 다 같은 7호 의견으로 비공개되는 거 맞으신가요?

○ 000 주무관

그렇게 처리했습니다.

○ 000 위원장

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가 삼청각 운영주체가 따로 작성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탁사업을 관리를 할 때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약관 같은 것이지 싶은데 혹시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약서가 작성이 됩니까?

○ 000 주무관

그렇습니다. 저희 서울시랑 민간업체랑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계약서 서류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.

○ 000 위원장

그러면 일반적인 서약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?

○ 000 주무관

그렇습니다.

○ 000 위원장

먼저 주심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.

○ 000 위원

저는 여기에 안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2022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삼청각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관련 서울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이견 문서가 없다고 하니까 각하로 처리하고요.

이 근로자 권리보호이행계약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. 내용 자체도 경영상·업무상 비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요. 그래서

이거는 공개를 하고요.

나머지는 이 주무부서 의견에 따라서 삼청각 위수탁 협약서는 비공개, 또 지도점검 결과보고는 부분공개로 의견 내겠습니다.

○ 000 위원장

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실까요?

○ 000 위원

저도 전부 동의합니다.

○ 000 위원

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.

○ 000 위원장

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.

저희 주심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데 지금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는 부분공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그래서 부분공개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.

의의가 없으므로 **의안번호 제2023-64호는 “부분인용”**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## 2. [의안번호 2023-65] : 주거정비과-3354(2022.2.25.)의 붙임문서

○ 000 위원

일단 이 신통기획 신청서 이거 자체는 누가 작성한 서류인가요?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신청서요. 구청에서 작성한 건가요?

○ 000 주무관

은평구청에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저희 시청으로 제출한 공문입니다.

○ 000 위원

구청이 작성한 것이라는 거지요?

○ 000 주무관

네.

○ 000 위원

알겠습니다.

그러면 이 사업지 신청서의 내용은 어차피 부분공개 의견을 주셔서 제가 더 여쭙볼 건 없을 것 같고요.

비공개자료 중에 이 물리적요건 검토자료라는 엑셀파일이 있어요. 이 엑셀파일의 내용은 공개됐을 때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데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정보인가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

○ 000 주무관

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에는 이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접수일자 기준으로 해서 분양대상자로 판단하고 있거든요.

그런데 현재 여기 물리적요건 검토자료 내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일자라든가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런 전체 지번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공개할 시에는 조금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저희 주거정비과의 판단에서는 정보공개법 제1항 8호에 따라서 비공개처리한 사항입니다.

○ 000 위원

혹시 이 물리적요건 검토자료는 나중에 사업을 만약에 하게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내용들인가요?

○ 000 주무관

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나서 정비계획 입안절차에서 주민분들이 공람 시에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.

○ 000 위원

그렇지요. 그러니까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공람공고하는 단계에서 이 내용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. 왜냐하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는 주민들이 봐야 될 테니까. 그렇지요?

○ 000 주무관

맞습니다.

○ 000 위원장

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
○ 000 위원

제가 하나 하겠는데요.

이 토지소유자 검토자료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? 이의신청인이 이거는 정보공개를 청구 안 한 것 같은데 이 토지소유자 검토자료가 갑자기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비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어디서 신청이 된 건가요?

○ 000 주무관

이분이 요청하신 내용이랑 저희가 문서에다가 결재받은 거랑 조금 내용이 달라서요.

저희가 결재받은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검토자료로서 올라가 있고 이분이 요청하신 자료는 주거정비지수 검토자료로 돼 있어서 저희랑 달라서요.

○ 000 위원

주거정비지수 검토는 이 엑셀파일에 있는 이 앞부분이잖아요.

○ 000 주무관

맞습니다.

그런데 토지등소유자, 그런데 이분이 요청하신 공문번호상의 내부에 있는 저희가 결제 받은 붙임문서에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

○ 000 위원

이게 그 붙임문서를 전부 다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들어가 있다 이건가요?

○ 000 주무관

맞습니다.

○ 000 위원

알겠습니다.

그리고 여기서 보면 행정정보공개청구에서 주거정비지수 검토자료 한 부는 예전에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공개를 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

이 판례인지 사건을 적시해 주셨는데요. 그러면 주거정비지수 검토 이거는 다른 데서는 공개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한다는 건가요?

○ 000 주무관

주거정비지수 검토자료 안에 토지면적이라든가 개인 성함이라든가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어서요.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를 한 사항입니다.

○ 000 위원

개인정보들이 다 들어 있어서 비공개로 한 것이다.

○ 000 주무관

네.

○ 000 위원장

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요.

지금 답변내용 중에 보면 해당 과에서 부분인용해서 구역명, 구역면적, 용도지역, 추진

단계, 추진경위 등 공개 가능이라고 따로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셨는데요.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정보공개법 9조의 8호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?

○ 000 주무관

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분양대상에 대한 토지면적이라든지, 개개인 직원들의 토지면적이라든지 대략적인 사업개요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공개를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어서.

○ 000 위원장

부분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?

○ 000 주무관

그렇습니다.

○ 000 위원장

그러면 주심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000 위원

이게 정보공개청구서상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검토자료 이거는 청구내용이 없는 건 맞는데요.

다만 청구서를 쓰면서 붙임문서 1, 2, 3을 달라 이런 취지로 선해해서 소관부처에서 당시 붙임문서 세 가지를 정보공개대상 여부로 이렇게 선해해 준 것 같습니다.

그래서 기왕 그런 상황에서 각하나 부존재 뭐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, 그냥 각각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신청서는 아까 부서에서도 이미 관련 내용은 한번 공개된 상황이라고 하고, 제가 봐도 이 정도 개요는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시장정보 수준이어서, 그리고 부서의 의견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공개를 하고요.

두 번째로 토지등소유자 검토자료는 부동산투기도 투기지만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로 생각이 되고요.

마지막으로 물리적요건 검토자료에서 맨 앞에 있는 주거정비지수하고 법적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이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굳이 이걸 비공개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

들지만, 뒤에 이 문서 전체가 크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측면이 있고, 두 번째로 이게 어차피 공람공고할 때 주민들이 이 법적요건이나 주거정비지수를 갖췄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그런 공개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부동산투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

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결국은 소관부서 의견하고 동일하게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신청서는 공개, 나머지 두 개는 비공개입니다.

○ 000 위원장

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○ 000 위원

저도 같은 의견입니다.

○ 000 위원

저도 같은 의견입니다.

○ 000 위원장

저도 같은 의견입니다.

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입니다.

부분인용은 사업신청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공개 가능 의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서만 부분공개 결정하고, 나머지는 그대로 비공개 의견입니다.

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-65호는 “부분인용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### 3. [의안번호 2023-66] : 119신고내역 및 구급활동일지

#### ○ 000 위원장

세 번째 안건 상정입니다.

의안번호 제2023-66호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.

그런데 지금 이 안건은 소관부서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요?

#### ○ 000 주무관

소방 전체 훈련 때문에 부서에서 참석 못 하셨습니다.

#### ○ 000 위원장

참석을 못 하셨고요.

그런데 의견으로는 이 사항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그냥 추가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정보공개에 관련된 안건이 아니어서 그냥 각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.

주심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000 위원

이 청구인이 119 신고를 해서 그때 119에서 출동이 됐었는데 그 신고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, 송파소방서 측에서는 신고자의 연락처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

그런데 거기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

이거는 어쨌든 어떤 정보청구를 한 내역에 대한 비공개가 있었고,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수정해 달라는 취지여서 이게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.

이 경우에는 결정 자체를 소관부서 의견에 따라 각하를 하는 것이 맞는지,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다른 위원님들 아시는 부분이나 기타 선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
#### ○ 000 위원

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각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○ 000 위원

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

○ 000 위원장

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

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

그러면 지금 소관부서가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

그래서 지금 참석위원 네 분 모두가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각하 의견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

이의가 없으므로 **의안번호 제2023-66호**는 “**각하**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.